[제명 개정(舊 의과대학 교원신규임용규칙) 2006. 7. 25, 2007. 2. 9]

의료원 교원임용규칙

제정 2003. 3. 5
1차 개정 2004. 11. 26
2차 개정 2006. 7. 25
3차 전면개정 2007. 2. 9
4차 개정 2007. 7. 10
5차 개정 2008. 7. 14
6차 개정 2009. 2. 27
7차 개정 2009. 9. 16
8차 개정 2010. 5. 24
9차 개정 2010. 11. 18
10차 개정 2011. 2. 15
11차 개정 2011. 3. 30
12차 개정 2011. 7. 27
13차 개정 2012. 5. 14
14차 개정 2012. 9. 26
15차 개정 2015. 5. 6
16차 전면개정 2017. 6. 30
17차 개정 2017. 11. 27
18차 개정 2018. 8. 30
19차 개정 2020. 2. 19
20차 개정 2020. 3. 9
21차 개정 2020. 7. 29
22차 개정 2021. 5. 21
23차 개정 2021. 11. 25
24차 개정 2022. 3. 7
25차 개정 2022. 7. 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제13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라 한다)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료원 교원에게 적용한다. 단, 특별임용교원 중 연구교수와 Non-MD 진료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증·충원규모 및 분야) 의료원장은 예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증·충원규모와 분야를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신규임용

제 4 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에 전공분야,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 5 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성적증명서
3. 연구실적 목록 및 실적물
4. 자기소개서
5. 교육 및 연구계획서
6.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임상의사에 한함)
7. 경력 및 재직증명서

② 학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제출서류의 적격성 분류) 학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자격과 형식적 하자가 없는 지원자의 서류에 한해 제9조의 각 단계별 심사를 의뢰한다.

제 7 조(신규임용기준) 교원의 신규임용은 별표 1 '신규임용 직급별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2.19., 2020.3.9., 2020.7.29. 2021.5.21., 2022.3.7., 2022.7.13.)

제 8 조(신임교원 심사위원회) ① 신임교원 채용시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심도있는 전공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실 또는 과별(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단위, 간호대학은 학과단위)로 신임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초빙분야와 관련한 전공 교원이 없거나 공통분야로 초빙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초빙분야별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 또는 과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주임교수 또는 과장(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간호대학은 학과장)이 된다. 다만, 초빙분야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은 초빙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교외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기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9 조(신임교원의 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실시한다.

1. 기초심사 : 초빙분야의 전공일치 여부를 가 · 부로 평가하며, 부적격자는 전공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전공심사 : 다음 각목을 심사하여 공개강의 대상자로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연구, 진료업적 등이 탁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연구실적물

나. 자기소개서, 교육 · 연구계획서

다. 면접

② 공개강의 :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학장이 추천한 교내 교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 : 기초, 전공심사 및 공개강의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여 임용적합성을 심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간호대학은 심사위원회에서 전공심사와 공개강의를 통합 심사하여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 10 조(임 용)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0.>

제 11 조(특별채용) ①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사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은 특별채용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개채용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료원장은 의료원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9조 제2항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 12 조(신분보장) ①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우학원 정관에 의한다.

제 14 조(보 수) 신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퇴직금)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 3 장 승진 · 재임용

제 16 조(대상) ① 승진임용은 최저승진소요연수, 교육/연구경력 및 최소업적기준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직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연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② 재임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7 조(승진 · 재임용 기준) ①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별표 2 '교원 승진임용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교육/연구경력 및 최소업적기준' 및 별표3 '교원 재임용 직급별 최소업적기준'과 같고 임용

심사 평정점수 C등급(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제22조(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특별승진) 제4항의 특별승진의 경우 교육/연구 경력을 1년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2020.2.19., 2020.3.9., 2020.7.29. 2021.5.21.)

② 전항의 연구실적 인정 및 적용방법은 각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규칙 」 및 「교수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 18 조(승진·재임용 신청) ①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은 해당기간의 관련 서류를 주임교수 및 병원장(임상교원의 경우)의 심사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재임용 대상 교원은 관련 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속 대학(원)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 19 조(심사 및 절차) ①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임용기간 중의 연구 수행능력, 강의능력, 전공영역 활동실적, 대학 발전에의 기여도 및 인품 등을 참작하여 평정한다.

② 소속 대학(원)장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승진·재임용 제청 가부를 의료원장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진·재임용한다. (개정 2018.8.30.)

③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대학(원)장에게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정결과 재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소속대학(원)장은 당해 교원에게 소명기회(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통보)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한다.

제 4 장 기 타

제 21 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0조 제4항은 2002년 9월 1일 이후의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2012년 5월 14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은 차차기 재임용시부터 별표3 '교원 재임용 직급별 최소업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임용 필수진료업적기준 적용례) 이 규칙 별표2의 승진임용 필수진료업적기준은 2018년 9월 1일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③ (재임용 필수진료업적기준 적용례) 이 규칙 별표3의 재임용 필수진료업적기준은 2018년 9월 1일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자격기준은 2020년 9월 1일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2의 교원 승진임용 직급별 최소업적기준은 2023년 3월 1일 교원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은 즉시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은 차차기 재임용시부터 별표3의 교원 재임용 직급별 최소업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SCI, SCIE 통합에 따른 적용례) 별표1, 2, 3의 적용은 2020년 이후 논문부터 적용하며 이전 논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SCI, SCIE 통합에 따른 적용례) 개정일 이후 신규, 승진 및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 2의 교육/연구경력은 2020년 9월 1일 신규 및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학, 의료관리학, 법의학, 보건정책분야 등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이 사회의학계열인 경우 KCI 논문의 SCIE급 논문 대체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3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는 즉시 적용한다. (개정 2021.11.2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의 간호대학 학위 및 자격기준은 2022년 9월 1일 신규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의 간호대학 학위 및 자격기준은 2023년 3월 이후 신규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3년 3월 이전 타대학의 교원 임용 경력이 있는 경우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0.2.19., 2020.3.9., 2020.7.29. 2021.5.21., 2022.3.7., 2022.7.13.)

신규임용 직급별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1. 교육 및 연구경력

가. 직급별 최소경력 년수 및 자격기준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교육/연구
경력</th><th colspan="4">자격 기준</th><th rowspan="3">비고</th></tr>
<tr><th colspan="3">논문</th><th rowspan="2">학위 및 자격</th></tr>
<tr><th colspan="3">의과대학</th><th>간호대학</th></tr>
<tr><td rowspan="2">조교수</td><td rowspan="2">4년</td><td>기초</td><td>임상</td><td>인문사회
의학계열</td><td rowspan="2">3편</td><td rowspan="4"><기초(연구소포함)·간호대학>
* 박사학위 소지자
[단,MD의 경우 석사도 인정]
<임상>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간호대학>
* <삭제 2022.3.7.>
* 임상경력 3년 이상 <개정 2022.7.13.>
* <삭제 2022.3.7.>
* <삭제 2022.3.7.>
* <삭제 2022.3.7.></td><td rowspan="4">*논문은
SSCI,
IF 1.0이상
SCIE 등재
논문
주저자만
인정</td></tr>
<tr><td>2편</td><td>3편</td><td>3편 또는
KCI 6편</td></tr>
<tr><td>부교수</td><td>11년</td><td colspan="2">5편</td><td>5편 또는
KCI 10편</td><td>5편</td></tr>
<tr><td>교 수</td><td>16년</td><td colspan="2">7편</td><td>7편 또는
KCI 14편</td><td>7편</td></tr>
</table>

(주1)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지칭함.

(주2) 의과대학 기초의학 조교수 신임교원 연구실적 환산 시 공동주저자는 1편으로 산정함.

(주3)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학, 의료관리학, 법의학, 보건정책분야 등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이 사회의학 계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학, 의료관리학, 법의학, 보건정책분야 등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이 사회의학계열인 경우는 국내논문(KCI), 정책보고서, 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국내논문(KCI), 정책보고서, 저서 등은 의료원 교원임용규칙제8조(신임교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체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예외적용>

1. 기초 및 연구소의 M.D.교원은 교육 · 연구 경력년수를 예외 적용할 수 있다.
2. 교육 및 임상진료 등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다.

나. 경력 환산율(%)

경 력 사 항	환산율(%)	비 고
인턴	0.7 x 연수	
전공의(레지던트)	0.7 x 연수	4년까지만 인정
군복무(군의관), 공중보건의	1.0 x 연수	3년까지만 인정
대학/대학병원,연구기관 교원	1.0 x 연수	
전문대학/전공의 교육병원 전임의 근무	0.7 x 연수	
일반종합병원 전임의사	0.7 x 연수	
개인병원 및 의원	0.5 x 연수	
해외연수(전문의 취득후)	1.0 x 연수	
박사학위	1.0 x 연수	3년까지만 인정하며 조기졸업시 해당기간만 인정
석사학위	1.0 x 연수	2년까지만 인정하며 조기졸업시 해당기간만 인정

(주) 1. 군복무 중 일반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호봉에는 가산되나 경력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2. 상위 경력이 2개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2. 연구실적

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연구실적물. 단, 군 복무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 제외

나. 연구실적물의 종류 및 실적 환산 점수

1) 연구 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은 원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게재 예정일이 임용일 이전이어야 한다.

게재된 논문은 응모시 제출한 논문과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 · 삭제 ·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연구실적 인정 점수 및 인정환산율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의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2) (개정 2017.11.27., 2020.2.19., 2020.3.9., 2020.7.29. 2021.5.21.)

교원 승진임용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교육/연구경력 및 최소업적 기준

<table>
<tr><th rowspan="2">승진
구분</th><th rowspan="2">소요
년수</th><th rowspan="2">교육/연구
경력주)</th><th colspan="4">최소 기준평점</th></tr>
<tr><th>기초학(연구소, 센터)</th><th>임상학</th><th>인문사회의학계열</th><th>간호대학</th></tr>
<tr><td rowspan="2">조교수
→부교수</td><td rowspan="2">4년</td><td rowspan="2">11년</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4년
IF5.0 이상인 SCIE급 논문주1) 2편 이상,
또는 IF합 16.0 이상</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4년
SCIE급 논문주3) 4편 이상,
또는 IF합 8.0 이상</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4년
SCIE급 논문주3) 4편 이상 또는 IF합
8.0 이상 또는 KCI 8편 이상</td><td>총괄업적평점: 1,300점
최소연구평점: 900점
<필수연구업적> - 최근 4년
SCIE급 논문 4편 이상</td></tr>
<tr><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IF 5.0 이상인 SCIE급 논문
0.5편 또는 IF합 4.0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주3) 논문 1편
또는 IF합 2.0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주3) 논문 1편
또는 IF합 2.0 또는 KCI 2편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 논문 1편 추가</td></tr>
<tr><td rowspan="2">부교수
→교수</td><td rowspan="2">5년</td><td rowspan="2"></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5년
IF5.0 이상인 SCIE급 논문주2) 3편 이상,
또는 IF합 25.0 이상</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5년
SCIE급 논문주3) 5편 이상,
또는 IF합 10.0 이상</td><td><필수연구업적> - 최근 5년
SCIE급 논문주3) 5편 이상 또는
IF합 10.0 이상 또는 KCI 10편 이상</td><td>총괄업적평점: 1,600점
최소연구평점: 1,200점
<필수연구업적> - 최근 5년
SCIE급 논문 5편 이상 또는 IF합 10.0 이상</td></tr>
<tr><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 마다 IF 5.0 이상인 SCIE급 논문
0.6편 또는 IF합 5.0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 논문주3) 1편
또는 IF합 2.0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주3) 논문 1편
또는 IF합 2.0 또는 KCI 2편 추가</td><td>현직급 재직 기간 선택 가능 :
초과 1년마다 SCIE급 논문 1편 또는 IF합
2.0 추가</td></tr>
<tr><td colspan="3">공통 및 교육업적
(필수)</td><td colspan="3">- 기초(연구소, 센터), 임상 :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공통 및 교육영역 기본필수, 선택 필수 충족 (Pass)
- 임상 :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필수진료업적 - 연간평균 14점 이상</td><td></td></tr>
<tr><td colspan="3">(주)</td><td colspan="4">1. IF(Impact Factor)는 교수업적평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값을 적용한다.
2. 신규임용 후 첫 해의 공통 및 교육영역의 필수 충족 및 유예항목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른다.
3. 필수연구업적에 포함되는 논문의 인정범위
<table>
<tr><th>기초학(연구소, 센터), 임상학</th><th>간호대학</th></tr>
<tr><td>가. 주저자는 100% 인정한다.(공동 주저자는 70%만 인정하되 공동주저자가 의료원외 단과대학 혹은 타 대학 교원인 경우에는 100% 인정한다.)
나. 게재예정 논문은 게재예정 학술지의 권, 호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재예정논문에 한하여 차기 승진심사 시 합산할 수 있다.
다. 공저자 인정 : 공저자 논문은 저자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단, 저자 전부가 동일 교실(과)인 경우는 공저자 인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교육 AMC 환산 인정 적용(구체적 기준은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따른다.)</td><td>가. 주저자에 한한다.(공동 주저자 70%만 인정)
나. 게재예정 논문은 게재예정 학술지의 권, 호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필수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재예정논문에 한하여 차기 승진심사 시 합산 할 수 있다.</td></tr>
</table>
4. SCIE급 학술지의 종설은 원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증례 등은 원저의 50%만 인정한다.
5. 주1) ~ 주2)는 각 세부전공분야에서 IF상위 20% 이내의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각 세부전공분야 IF상위 20% 이내의 논문은 JCR(Journal Citation Reports) 검색결과로 적용한다.(SSCI, SCIE 등 포함)
6. SCIE급 논문이란 SSCI, IF 1.0이상의 SCIE 등재 논문을 의미한다.
7. 주3) IF 1.0미만의 SCIE 논문 2편은 SCIE급 1편으로 간주한다.
8. IF합은 SCIE급 논문의 IF값을 합산한다.
9. 보건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소업적기준은 기초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10.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학, 의료관리학, 법의학, 보건정책분야 등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이 사회의학계열인 교원의 최소업적기준은 임상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필수연구업적을 국내논문(KCI), 정책보고서, 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인정여부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td></tr>
</table>

주) 교육/연구경력은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만 적용됨

(별표3) (개정 2017.11.27., 2020.2.19., 2020.3.9., 2021.5.21.)

교원 재임용 직급별 최소업적 기준

구 분	계약기간	최소 기준평점			
		기초학(연구소, 센터)	임상학	인문사회의학계열	간호대학
조교수	4년	<필수연구업적> IF 5.0 이상인 SCIE급 논문[주1] 1편 이상, 또는 IF 합이 8.0이상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주3] 3편 이상, 또는 IF합이 6.0 이상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주3] 3편 이상, 또는 IF합이 6.0 이상 또는 KCI 6편 이상	총괄업적평점: 800점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 3편 이상
부교수	6년	<필수연구업적> IF 5.0 이상인 SCIE급 논문[주2] 2편 이상, 또는 IF 합이 18.0이상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주3] 4.5편 이상, 또는 IF합이 9.0 이상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주3] 4.5편 이상, 또는 IF합이 9.0 이상 또는 KCI 9편 이상	총괄업적평점: 1,200점 <필수연구업적> SCIE급 논문 4편 이상
공통 및 교육업적 (필수)		- 기초(연구소, 센터), 임상 :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공통 및 교육영역 기본필수, 선택 필수 충족 (Pass) - 임상 :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필수진료업적 - 연간평균 14점 이상			

(주)

1. IF(Impact Factor)는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값을 적용한다.
2.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재임용
   가. 본 대학에서 수행한 업적만을 인정한다.
   나. 임용 첫 해의 공통 및 교육영역의 필수 충족 및 유예항목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른다.
3. 필수연구업적에 포함되는 논문의 인정범위

기초학(연구소, 센터), 임상학	간호대학
가. 주저자는 100% 인정한다. (공동 주저자는 70%만 인정하되 공동주저자가 의료원외 단과대학 혹은 타 대학 교원인 경우에는 100% 인정한다.) 나. 게재예정 논문은 epub 게재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재임용심사에 이미 반영된 업적은 다음 재임용 시 반복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저자 인정 : 공저자 논문은 저자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단, 저자 전부가 동일 교실(과)인 경우는 공저자 인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교육 AMC 환산 인정 적용(구체적 기준은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따른다.)	가. 주저자에 한한다.(공동 주저자 70%만 인정) 나. 게재예정 논문은 epub 게재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재임용심사에 이미 반영된 업적은 다음 재임용 시 반복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4. SCIE급 학술지의 종설은 원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증례 등은 원저의 50%만 인정한다.
5. SCIE급 논문이란 SSCI, IF 1.0이상 SCIE 등재 논문을 의미한다.
6. 주1) ~ 주2)는 각 세부전공분야에서 IF 상위 20% 이내의 논문으로 대치 할 수 있으며, 각 세부전공분야 IF상위 20% 이내의 논문은 JCR(Journal Citation Reports) 검색결과로 적용한다.(SSCI, SCIE 등 포함)
7. 주3) IF 1.0미만의 SCIE 논문 2편은 SCIE급 1편으로 간주한다.
8. IF합은 SCIE급 논문의 IF값을 합산한다.
9. 보건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소업적기준은 기초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10.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학, 의료관리학, 법의학, 보건정책분야 등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이 사회의학계열인 교원의 최소업적기준은 임상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필수연구업적을 국내논문(KCI), 정책보고서, 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인정여부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